

「군포도시공사 ESG 경영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7월 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94 호

군포도시공사 ESG 경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ESG 경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(구성 및 임기) 제3항 중 ‘경영시설본부장’을 ‘시설관리본부장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 책임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공사 이사회 이사 중에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을 공사 <u>경영시설본부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설관리본부장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